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306

제안년월일 : '98. 3. 18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함. (안 제11조 제4항)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